

고성군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14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 10. 16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1. 10. 16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1. 10. 24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사유

-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향후 예상되는 중수도 설치와 관련 조례정비와 아울러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시설 확장 등 상수도조례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대형건축물 증가 및 실내수영장 신설 등에 대비하여 중수도시설 정의 신설(안 제2조제6항)
나. 중수도 시설의 설치 등의 급수공사의 승인조항 신설(안 제6조의3, 4항)
다. 급수공사 자재의 인증규정(안 제7조제2항)
라. 사용료 규정을 사용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변경하고 사용료 현실화(안 제26조)
마. 업종의 구분 중 높은 요율의 적용규정 세분화(안 제27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개정안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서 물 값 현실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의 과소비를 막고 부족한 수자원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물 값을 인상함에 따라 고성군이 공급받고 있는 남강광역상수도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되고 수도요금의 기본요금제에서 사용단계별 누진요금 체계로 변경하여 절수형 요금체계를 확립하고 물 소비절약 생활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 또한 대형건축물 증가 및 고성군실내수영장 신설계획에 대비하여 중수도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복합건물에서 수도급수 용도 구분을 가정용, 영업용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 군민의 생활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내용을 검토한바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별표 2에서 업종별 요율 및 구분표의 내용이 재반현실 여건과 고성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문 : 안 제24조제2항의 “급수의 증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신청에 의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사유는
- 답 : 급수증지와 폐전의 기간을 계속해서 연장하게 되면 공무집행과 유지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임.
- 문 : 작년에도 인상된 수도요금을 계속해서 인상하게 되면 서민들의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지
- 답 : 가정용으로 10톤미만 기본요금을 적용 받는 가구수가 우리 군에 1,090가구로서 약 51%정도 되므로 어렵게 살고있는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종전보다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임.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1. 10. 24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